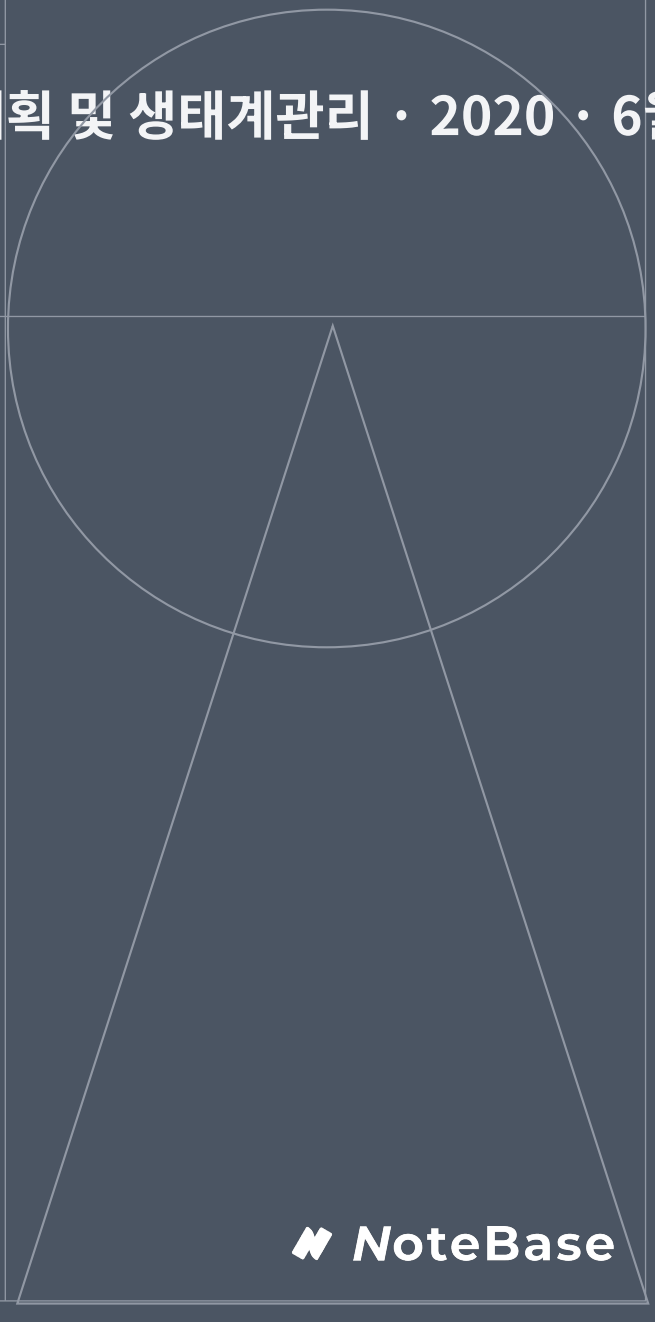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 2020 · 6월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 2020 · 6월

공무원/서울시/9급 ·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 2020 · 6월

문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주제공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도시농업공원
② 어린이공원
③ 묘지공원
④ 방재공원

정답 2번

①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농업공원은 **주제공원**으로 분류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2.12.18, 2013.5.22, 2016.3.22, 2020.2.4, 2021.1.12, 2026.3.5>
3.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바. 도시농업공원: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②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생활권공원**으로, 주제공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2.12.18, 2013.5.22, 2016.3.22, 2020.2.4, 2021.1.12, 2026.3.5>
2.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 · 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나.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NoteBase

③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묘지공원은 **주제공원**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2.12.18, 2013.5.22, 2016.3.22, 2020.2.4, 2021.1.12, 2026.3.5>
3.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라. 묘지공원: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④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도시민의 대피 및 구호 거점으로 활용하도록 설치하는 방재공원은 **주제공원**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2.12.18, 2013.5.22, 2016.3.22, 2020.2.4, 2021.1.12, 2026.3.5>
3.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사. 방재공원: 지진 등 재난발생 시 도시민 대피 및 구호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원

NoteBase

문 2. 조경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식생조사 및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방형의 조사지역을 설정하고 식생을 조사하는 방법은 쿼드라트법(quadrat method)이다.

② 녹지자연도는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총 10등급으로 구분한다.

③ 생태자연도는 산, 하천, 내륙습지, 호소, 농지, 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한다.

④ 비오톱지도(biotope mapping)는 친환경적인 공간 관리와 자연환경보전, 생태축 및 생태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녹지자연도는 하천·저수지 등의 수역에 부여하는 **0등급을 포함하여 0~10등급, 총 11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총 10등급'이라는 설명은 수역을 빠뜨린 것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쿼드라트법은 일정한 면적의 **방형구를 설정하여 그 안의 식생을 조사**하는 방법이다. 정방형 조사구 안에서 식물의 종류, 개체 수, 지표면을 덮는 정도인 피도 등을 기록하여 식물군집의 종 구성과 양적 특성을 파악한다.

② X: 녹지자연도는 식생의 자연성과 인위적인 변형 정도 등을 나타내는 지표로, **0등급부터 10등급까지 총 11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육지의 1~10등급 외에 하천·저수지 등 수역에 해당하는 0등급도 포함하므로, 선지의 등급 범위와 총 등급 수를 고쳐야 한다.

③ O: 생태자연도는 산·하천·내륙습지·호소·농지·도시 등의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평가하여 등급화한 지도이다. 식생의 자연성뿐 아니라 서식지와 경관 등 자연환경의 보전가치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이용한다.

④ O: 비오톱지도는 생물들이 생활공동체를 이루는 서식공간을 구분하고, 각 공간의 생태적 특성과 보전가치를 나타낸 지도이다. 이를 통해 보전할 서식지와 연결이 필요한 공간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친환경적인 공간 관리와 생태축·생태네트워크 조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NoteBase

문 3. <보기>안의 일반적인 조경계획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 기본계획 ㉡ 기본구상 ㉢ 기본전제
㉣ 실시설계 ㉤ 종합분석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조경계획에서는 **목표와 조건을 먼저 정하고**, 대상지의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간을 구상한다. 따라서 종합분석은 기본구상에 앞서며, 구상을 기본계획으로 구체화한 뒤 시공에 필요한 실시설계를 작성한다.

올바른 순서

㉢ → ㉤ → ㉡ → ㉠ → ㉣

㉢ 기본전제: 계획의 목적과 목표, 대상 범위와 기본 조건을 정한다. 무엇을 달성할 것인지가 정해져야 **조사·분석의 방향과 판단 기준**을 세울 수 있다.

㉤ 종합분석: 대상지의 자연환경과 인문·사회환경 등에 관한 조사·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이용 가능한 잠재력과 제약을 파악한다.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대상지에서 무엇이 가능하고 제한되는지**를 확인한 뒤 구상해야 한다.

㉡ 기본구상: 종합분석 결과와 계획 목표를 토대로 공간의 성격, 기능 배분과 동선의 큰 틀을 잡는다. 이를 개략적인 구상도로 표현하여 뒤에 작성할 **구체적인 계획의 방향**을 마련한다.

㉠ 기본계획: 기본구상을 발전시켜 토지이용, 동선, 시설물 배치, 식재 등의 계획을 구체화한다. 구상 단계의 큰 틀을 **공간별 배치와 부문별 계획**으로 정리하므로 기본구상 뒤에 온다.

㉣ 실시설계: 앞서 수립한 계획을 실제로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 도면과 시방서, 수량산출서 등을 작성한다. 시설의 치수·재료·시공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단계이므로 **계획 내용을 시공 가능한 설계도서로 전환**하는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4. 수질정화 식물 중 정수식물(挺水植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줄 (Zizania latifolia)

② 자라풀 (Hydrocharis dubia)

③ 물옥잠 (Monochoria korsakowii)

④ 부들 (Typha orientalis)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자라풀은 잎을 수면에 띄우고 자라는 **부유식물**이다. 물밑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줄기와 잎을 수면 위로 뻗는 정수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정수식물은 물밑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줄기와 잎의 상당 부분을 수면 위로 내놓고 자라는 수생식물이다. 여기서 '정수(挺水)'는 수면 위로 식물체가 솟아 있다는 뜻이다.

① O: 줄은 물밑 토양에 뿌리줄기를 뻗고, 줄기와 긴 잎이 **수면 위로 곧게 자라는** 정수식물이다.

② X: 자라풀은 잎 뒷면의 공기주머니를 이용해 **잎을 수면에 띄우고 자라는 부유식물**이다. 따라서 자라풀을 정수식물로 분류할 수 없다.

③ O: 물옥잠은 얕은 물의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줄기와 잎을 수면 위로 내놓는 정수식물이다. 물에 떠서 자라는 부레옥잠과 구별해야 한다.

④ O: 부들은 물밑 토양에 뿌리줄기를 뻗고 긴 잎과 꽃줄기를 수면 위로 올려 자라는 정수식물이다.

NoteBase

문 5. 환경과 생물의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질소(nitrogen)는 공기 성분의 78%를 차지하지만 대부분의 생물이 바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② 상리공생의 예로는 콩과식물과 질소고정 박테리아를 들 수 있다.

③ 기생은 기생생물이라 불리는 생물이 숙주라 불리는 생물의 체내나 체외에서 양분을 얻는 관계를 말한다.

④ 공생하는 두 생물 중 한쪽은 공생을 통해 이익을 얻지만 다른 쪽은 이해가 없는 관계를 편해공생이라고 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한쪽만 이익을 얻고 다른 쪽은 이익도 손해도 없는 관계는 **편리공생**이다. 편해공생은 한쪽이 해를 입고 다른 쪽은 영향을 받지 않는 관계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질소는 공기의 약 78%를 차지하지만, 질소 기체는 원자 사이의 결합이 매우 안정되어 대부분의 생물이 **직접 이용하지 못한다**. 질소고정 미생물은 질소 기체를 암모니아 등으로 바꾸며, 식물은 주로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 형태로 질소를 흡수한다.

② O: 콩과식물의 뿌리혹에 사는 질소고정 박테리아는 공기 중 질소를 고정하여 식물에 질소 화합물을 제공한다. 식물은 박테리아에 광합성으로 만든 유기물과 서식 공간을 제공하므로, **양쪽 모두 이익을 얻는 상리공생**에 해당한다.

③ O: 기생생물은 숙주의 체내나 체외에 살면서 숙주로부터 양분을 얻는다. 이때 기생생물은 이익을 얻지만 **숙주는 양분 손실 등의 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양쪽이 이익을 얻는 상리공생과 구별된다.

④ X: 한쪽은 이익을 얻고 다른 쪽은 이익도 손해도 없는 관계는 **편리공생**이다. **편해공생**은 한쪽이 해를 입고 다른 쪽은 이익도 손해도 없는 관계이므로, 선지의 관계 명칭을 '편리공생'으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공동주택의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일반적인 기준이 되는 실외 소음도는?

① 35데시벨 이상
② 45데시벨 이상
③ 55데시벨 이상
④ 65데시벨 이상

정답 4번

공통 해설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실외소음도가 **65데시벨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방음벽·방음림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①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 · 방음림(소음막이숲)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NoteBase

문 7. 클라렌스 페리(Clarence A. Perry)가 주장한 '근린주구(neighborhood unit)' 이론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규모에 있어서 주거 단위는 하나의 초등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 인구를 가져야 한다.

② 근린주구의 내부로 통과교통이 원활하도록 주간선도로를 설치해야 한다.

③ 근린주구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소공원과 레크리에이션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④ 근린상가는 근린주구 내 인구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인접 근린주구와 면해 있는 주구 외곽의 교통결절점에 배치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②의 '내부로 통과교통이 원활하도록'이 잘못된 설명이다. 페리는 주간선도로를 **근린주구의 외곽 경계**에 배치하고, 내부 도로는 **통과교통을 억제**하여 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을 보호하도록 계획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O: 근린주구의 규모는 **초등학교 하나를 유지할 수 있는 인구**를 기준으로 정한다. 학교를 중심으로 일상생활권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주거지의 실제 면적은 그 인구를 수용하는 데 필요한 인구밀도에 따라 달라진다.

② X: 주간선도로는 근린주구의 **외곽을 둘러싸는 경계**에 배치한다. 내부 도로는 주민의 주택과 생활시설에 접근하기 위한 도로이며, 외부 차량이 지름길로 이용하는 통과교통은 억제한다. 내부에 주간선도로를 두어 통과교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설명은 이 원칙과 반대이다.

③ O: 근린주구에는 주민의 휴식·놀이·운동 수요를 충족시키는 **소공원과 레크리에이션 공간의 체계**를 갖춘다. 이러한 공간을 주거지 안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가 기능을 제공한다.

④ O: 근린상가는 주구 인구의 생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1개소 이상 두며, **인접 근린주구와 접하는 외곽의 교통결절점**에 배치한다. 이 위치에서는 인접 주구에서도 접근하기 쉽고, 상가 이용 차량이 주거지 내부를 통과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NoteBase

문 8. 「자연공원법」에 따른 용도지구 결정을 설명할 때,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명칭을 가장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의 완충공간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로 결정한다.

① ㉠: 공원자연보존지구, ㉡: 공원자연환경지구
② ㉠: 공원자연환경지구, ㉡: 공원문화유산지구
③ ㉠: 공원자연환경지구, ㉡: 공원마을지구
④ ㉠: 공원문화유산지구, ㉡: 공원자연환경지구

정답 1번

공통 해설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공원자연환경지구로 결정한다.

자연공원법 제18조(용도지구)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5, 2016.5.29, 2019.11.26, 2023.8.8>
2.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緩衝空間)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NoteBase

문 9. 환경부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상 생태면적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생태면적률이란 전체 개발면적 중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② 시가화 건조지역(주거지역)의 토지피복 가중치는 0.1이다.

③ 관광단지의 개발인 경우 생태면적률 권장달성 목표값은 50%이다.

④ 토심이 90cm 이상인 인공지반 녹지의 가중치는 0.7이다.

정답 3번

①

생태면적률은 **전체 개발면적에 대한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의 비율**이다. 개발면적 전체가 분모이고 해당 토양면적이 분자이므로, 토양면적 자체의 크기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구별해야 한다.

생태면적률 적용지침(2016.7.1.) 1. 생태면적률의 개요 2) 용어의 정의
1. 생태면적률의 개요

2) 용어의 정의

◯ “생태면적률” 이란 전체 개발면적 중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NoteBase

②

현재 상태의 생태면적률을 산정할 때 **시가화 건조지역 중 주거지역의 토지피복 가중치는 0.1**이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2025. 3. 26. 개정) 부록 3 3. 3) ① 토지피복유형별 가중치
부록 3 생태면적률의 적용
3. 적용 대상 및 절차
3) 단계별 생태면적률 설정
① 현재 상태의 생태면적률

○ 사업대상지의 토지피복지도를 바탕으로 유형별 면적을 산출하고 가중치를 곱하여 현재 상태의 생태면적률을 산정

aligned& 현재 상태의 생태면적률& =Σ(토지피복유형별 면적×가중치)전체 대상지 면적×100(\%)aligned

○ 토지피복유형별 가중치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L76_X8HkrZqoATBLkbTKhY9GIPfKNEpp.webp

※ 토지피복유형은 환경부 토지피복지도 중분류(22개) 체계를 적용

NoteBase

③

관광단지 개발의 생태면적률 권장달성목표는 **50%가 아니라 60% 이상**이다.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 제3호 생태면적률 적용기준 표 중 관광단지의 개발
3. 생태면적률 달성목표

개발사업 유형별 생태면적률 달성목표는 다음 표와 같으며, 사업계획 수립, 계획 · 목표생태면적률 설정, 영향평가 협의시의 지표로 활용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jw0zC-g2kYeiYfMq3SbdUMROI92gHdc7.webp

※ 구도심 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시재정비 등 구도심에서의 개발사업에 적용

※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특성 · 내용, 지역적 특성(인구감소지역 등), 권장달성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계획 또는 사업에 적용할 생태면적률 달성목표를 최대 50퍼센트 범위 내까지 감소하여 설정할 수 있다.

④

인공지반 상부에 조성한 녹지는 **토심이 90cm 이상이면 가중치 0.7**을 적용한다.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 제4호 면적유형별 가중치 표 중 면적유형 4
4. 면적유형별 가중치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PuZBbBXDTeJ-19dZ0V9wQY9stTo6K9dF.webp

2. 면적유형별 가중치에 대한 상세한 판단기준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의 [부록3] 생태면적률 적용 내 [별첨3] 면적유형별 판단기준을 따른다.

NoteBase

문 1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은?

① 불투수층
② 기타수질오염원
③ 점오염원
④ 비점오염원

정답 4번

공통 해설

도시·도로·농지·산지·공사장 등에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비점오염원이라 한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2017.1.17, 2018.10.16, 2021.4.13, 2024.2.27, 2025.10.1>
2.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NoteBase

문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도시지역권 근린공원'의 유치거리 및 규모로 가장 옳은 것은?

① 500m 이하, 10,000m^2 이상
② 1,000m 이하, 30,000m^2 이상
③ 거리 제한 없음, 100,000m^2 이상
④ 거리 제한 없음, 1,000,000m^2 이상

정답 3번

공통 해설

도시지역권 근린공원의 유치거리는 **제한이 없으며**, 규모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다목(3)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제6조관련)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ooDZraO_vZACcUyCSXdjH2kw0lFsfXzQ.webp

NoteBase

문 12. 생태계 보전 및 복원을 위한 목표종군 중에서 유사한 서식지나 환경조건에 발생하는 군락을 대표하는 종은?

① 생태적 지표종(ecological indicators)
② 핵심종(keystone species)
③ 깃대종(flagship species)
④ 우산종(umbrella species)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생태적 지표종은 **특정 서식지나 환경조건을 반영하여 군락을 대표하는 종**이다. 그 종의 출현이나 개체수 변화를 통해 해당 군락과 환경의 상태를 파악한다.

개념 구분

생태적 지표종: 특정 서식지나 환경조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그곳에 함께 사는 생물들의 군락이나 생태적 상태를 나타내는 종이다. 문제의 '유사한 서식지나 환경조건에 발생하는 군락을 대표'한다는 말은 **한 종을 통해 군락과 환경의 상태를 파악**한다는 뜻이므로 생태적 지표종에 해당한다.

핵심종: 개체수나 생물량에 비해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종**이다. 군락의 상태를 알려 주는 지표 역할보다, 다른 종들과의 관계를 통해 생태계를 유지하는 역할에 초점을 둔다.

깃대종: 대중의 관심과 지지를 모아 **보전 활동의 상징으로 활용하는 종**이다. 환경조건을 나타내는 능력보다 보전의 필요성을 알리고 참여를 이끄는 역할이 중심이다.

우산종: 그 종과 서식지를 보호하면 **같은 서식지의 다른 여러 종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종이다. 군락의 상태를 나타내는 기능보다 한 종의 보전이 다른 종의 보전으로 이어지는 효과에 초점을 둔다.

NoteBase

문 13. 일반생태학에서 한 지역 내에서 같은 시간대에 사는 동일 종의 집단을 말하는 것은?

① 개체군 (population)

② 군집 (community)

③ 산포 (dispersal)

④ 개체 (individual)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같은 지역에서 같은 시간대에 사는 **동일 종의 개체들로 이루어진 집단**을 개체군이라 한다. 여러 종의 개체군이 함께 이루는 군집과 구별된다.

개념 구분

개체군(population): 일정한 지역에서 같은 시간대에 사는 **동일 종의 개체들이 이루는 집단**이다. 발문의 '한 지역', '같은 시간대', '동일 종의 집단'이 모두 개체군의 정의에 해당한다.

군집(community): 같은 지역에서 함께 사는 **여러 종의 개체군**으로 이루어진다. 하나의 종에 속하는 개체들만을 묶는 개체군보다 넓은 생물 집단이다.

개체(individual): 생물 한 마리를 뜻하며, 식물이라면 한 그루와 같은 하나의 생명체이다. 여러 개체로 이루어진 집단을 뜻하지 않는다.

산포(dispersal): 생물이 출생지나 기존 서식지에서 다른 장소로 퍼져 나가는 현상이다. 집단의 생태학적 구성 단위를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다.

NoteBase

문 1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도시공원 내 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하나의 도시공원 안에 설치하는 저류시설부지의 면적 비율은 해당 도시공원 전체면적의 40% 이하이어야 한다.

② 하나의 저류시설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하는 녹지의 면적은 해당 저류시설부지에 대하여 상시저류시설은 60% 이상, 일시저류시설은 40%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저류시설은 주변지형, 지질 및 수리·수문학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표면 아래로 빗물이 침투될 경우 지반의 붕괴가 우려되거나 자연환경의 훼손이 심하게 예상되는 지역에 설치한다.

④ 저류시설은 도시계획시설 중 저류시설로 중복 결정할 수 없다.

정답 2번

①

저류시설부지의 면적비율은 원칙적으로 도시공원 전체면적의 **50% 이하**이다. 다만, 공원관리청이 수변공간 조성·공원시설과의 겸용 등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하거나 기존 저수지를 저류시설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4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13조관련)
4. 하나의 도시공원 안에 설치하는 저류시설부지의 면적비율은 해당도시공원 전체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공원관리청이 수변공간조성 및 공원시설과의 겸용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존의 저수지를 저류시설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저류시설부지에 확보해야 하는 녹지면적은 해당 부지면적의 **상시저류시설 60% 이상, 일시저류시설 40% 이상**이다. 이 녹지면적에는 공원시설 중 조경시설과 상시저류시설을 포함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5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13조관련)
5. 하나의 저류시설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하는 녹지(공원시설 중 조경시설과 상시저류시설을 포함한다)의 면적은 해당저류시설부지에 대하여 상시저류시설(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평상시에는 일정량의 물을 저류하고 강우시에는 저류지에 일시적으로 저류하도록 설계된 시설을 말한다)은 60퍼센트 이상, 일시저류시설(평상시에는 건조상태로 유지하고 강우로 인하여 유입이 있을 때만 일시적으로 저류하도록 설계된 시설을 말한다)은 4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NoteBase

③

빗물의 지하 침투로 지반 붕괴가 우려되거나 자연환경의 심한 훼손이 예상되는 지역은 저류시설의 **설치 금지 장소**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 다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13조관련)
다. 지표면 아래로 빗물이 침투될 경우 지반의 붕괴가 우려되거나 자연환경의 훼손이 심하게 예상되는 지역

④

도시공원 내 저류시설은 도시계획시설 중 **저류시설로 중복 결정해야 한다**. 중복 결정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13조관련)
3. 저류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중 저류시설로 중복 결정하여야 한다.

NoteBase

문 15. 생활사 전략에 따른 식물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쟁형 식물들은 주로 초본, 관목, 교목이다.

② 스트레스 내성형 식물들은 매우 느리게 생장한다.

③ 스트레스 내성형 식물들은 생식에 적은 투자를 한다.

④ 교란지 식물들은 늦게 생식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늦게 생식한다'는 교란지 식물의 특징과 반대이다. 교란지 식물은 다음 교란으로 개체가 손상되기 전에 번식을 마칠 수 있도록 **일찍 생식**하는 전략을 취한다.

선지별 해설

그라임의 식물 생활사 전략은 생장을 제한하는 스트레스와 식물체를 손상시키는 교란에 대한 적응에 따라 경쟁형·스트레스 내성형·교란지형으로 구분한다.

① O: 경쟁형 식물에는 다년생 초본, 관목, 교목이 포함된다. 자원이 비교적 풍부하고 교란이 적은 환경에서 **빠른 생장과 공간 점유**를 통해 빛·물·양분을 먼저 확보하여 다른 식물과의 경쟁에서 유리해진다.

② O: 스트레스 내성형 식물은 양분이나 수분이 부족하거나 온도 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환경에 적응한 유형이다. 자원을 빠르게 소모하는 생장보다 보존과 생존에 유리한 특성을 가지므로 **생장 속도가 매우 느리다**.

③ O: 스트레스 내성형 식물은 제한된 자원을 생식에 대량으로 쓰기보다 **기존 개체의 유지와 장기 생존**에 우선 배분한다. 따라서 교란지 식물처럼 단기간의 종자 생산에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유형에 비해 생식에 대한 투자가 적다.

④ X: 교란지 식물은 자원 조건은 비교적 좋지만 경작·예초 등으로 식물체가 자주 손상되는 환경에 적응한 유형이다. 생식을 늦추면 번식하기 전에 다음 교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빠르게 생장하여 일찍 생식**하고 종자 생산에 많은 자원을 배분한다. '늦게 생식한다'는 '일찍 생식한다'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1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도시공원 내에 설치할 수 없는 것은?

① 공립유치원
② 대형마트
③ 유스호스텔
④ 자동차경주장

정답 4번

①

공립유치원은 공원시설 중 **교양시설**에 포함된다. **묘지공원을 제외한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사목
공원시설의 종류(제3조관련)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jFOPI5jz4k-awNhmFI0RKfRZtm4p8erQ.web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②다음 각 호의 공원시설은 각 호에서 정한 도시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다.

NoteBase

②

대형마트는 공원시설 중 **편익시설**에 포함된다. **국제경기대회 개최 목적으로 경기장이 설치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공원**에서 매장면적과 부대시설 연면적이 각각 1만 6,500제곱미터 이하이면 설치할 수 있다. 건축물 내부 또는 주차장 지하에 설치해야 하며, 설치를 위한 토지 형질변경이나 증축을 위한 설계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다목
공원시설의 종류(제3조관련)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FdrThjlEAu40t7HDgIvZh24iiw69HtBT.web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②다음 각 호의 공원시설은 각 호에서 정한 도시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제5호, 제8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공원시설은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조례로 해당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면적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1.10, 2012.12.11, 2013.11.22, 2015.2.12, 2015.9.11, 2016.3.31, 2017.10.27, 2019.1.4, 2020.5.8, 2021.4.2, 2021.12.31, 2026.8.25>
4. 다음 각 목의 편익시설 등: 국제경기대회 개최를 목적으로 경기장이 설치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공원
나.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형마트 또는 쇼핑센터로서 매장면적(대형마트와 쇼핑센터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및 부대시설(기계실 및 창고를 포함한다)의 연면적이 각각 1만6천5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⑦ 제2항제4호에 따른 시설은 건축물의 내부 또는 주차장의 지하에 이를 설치하되, 해당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증축을 위한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 <신설 2008.11.10>

NoteBase

③

유스호스텔은 공원시설 중 **편익시설**이다. 원칙적으로 묘지공원을 제외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에 설치하되, 조례로 면적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해당 공원의 기능 수행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치가 허용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나목
공원시설의 종류(제3조관련)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bGaRi63HaPqvjVqprzyaUAFA_4hCjFEA.web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②다음 각 호의 공원시설은 각 호에서 정한 도시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제5호, 제8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공원시설은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조례로 해당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면적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1.10, 2012.12.11, 2013.11.22, 2015.2.12, 2015.9.11, 2016.3.31, 2017.10.27, 2019.1.4, 2020.5.8, 2021.4.2, 2021.12.31, 2026.8.25>
1. 휴양시설 중 수목원: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1의2. 유희시설 중 순환회전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유희시설(전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해당시설의 이용에 있어 사용료를 징수하는 시설 :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2. 편익시설 중 휴게음식점 :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다만, 10만제곱미터 미만인 도시공원(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을 제외한다)의 경우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원시설 안에 설치할 수 있다.
2의2. 편익시설 중 일반음식점 :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다만,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안의 5만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공원으로서 공원관리청이 관할 도시공원위원회(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 · 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 · 군 · 구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원시설 안에 설치할 수 있다.
3. 편익시설 중 유스호스텔 :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묘지공원을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편익시설 등: 국제경기대회 개최를 목적으로 경기장이 설치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공원
가. 선수 전용숙소 및 운동시설 관련 사무실
나.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형마트 또는 쇼핑센터로서 매장면적(대형마트와 쇼핑센터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및 부대시설(기계실 및 창고를 포함한다)의 연면적이 각각 1만6천5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다. 별표 1 제9호 바목의 시설
5. 운동시설 중 승마장 :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및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공원
6. 운동시설 중 골프장 :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NoteBase

7.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 :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및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공원. 다만, 다른 운동시설과 함께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이하 "실내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은 그 면적이 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해당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원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이를 설치할 수 있다.
8. 일반경기용으로 전용되는 운동시설 :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공원
9. 교양시설 중 어린이집 · 유치원 : 1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묘지공원을 제외한다).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은 해당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다.
10. 교양시설 중 학생기숙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시공원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학교(이하 이 호에서 "대학"이라 한다)의 교지(校地)에 있거나 교지에 닿아 있을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따라 해당 도시공원에 대한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것
다. 가목에 따른 대학의 설립 · 경영자(국립대학법인을 포함한다)가 해당 도시공원의 부지 중 학생기숙사를 건축할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11. 별표 1 제9호 다목에 따른 동물놀이터: 다음 각 목의 도시공원
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나. 문화공원, 체육공원, 방재공원 및 법 제15조제1항제3호 아목에 따른 공원
12. 별표 1 제9호 라목에 따른 보훈회관: 다음 각 목의 도시공원
가.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나. 법 제15조제1항제3호 아목에 따른 공원
③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유스호스텔은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④

공원시설에 해당하는 운동시설에서는 **자동차경주장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므로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없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가목 단서
공원시설의 종류(제3조관련)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tIMktLNdu73V1-BZ1LOlQZK1fywGj4FK.webp

NoteBase

문 17. 생태계 보전을 위한 국제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멸종위기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은 국제 거래는 물론 국내 거래에도 엄격하게 적용된다.

② 이동성 야생동물종의 보전에 관한 협약(CMS)은 해당 지역 주민 교육을 통해 자연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에 대한 인식확대, 능력배양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③ 생물다양성 협약(CBD)은 생물종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 유리하다.

④ 람사르협약의 주된 목적은 동·식물 서식처 기능과 생물자원 생산 및 정화 기능을 갖춘 습지 보전을 하는 것이다.

정답 1번

①

CITES의 거래 규제 대상은 **수출·재수출·수입·해상반입 등 국제거래**이다. 각국이 국내법으로 더 엄격한 규제를 둘 수 있지만, 협약 자체가 국내거래 전반에 국제거래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제1조 다목
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요구되지 아니하는 한,
다. "거래"라 함은 수출·재수출·수입 및 해상으로부터 반입을 말한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제14조 제1항 가목
1.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국내조치를 채택할 당사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 부속서 Ⅰ, Ⅱ 및 Ⅲ에 포함된 종의 표본의 거래·포획 채취· 소지 또는 운송 조건에 관한 더욱 엄격한 국내조치, 또는 이의 완전한 금지

NoteBase

②

CMS의 보전 활동은 **지역 주민 교육·인식 확대와 보전 역량 강화**를 중시한다. 주민이 이동성 야생동물과 서식지의 가치를 이해하고 보전에 참여하도록 하여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뒷받침한다.

이동성 야생동물종의 보전에 관한 협약 당사국총회 결의 제14.17호 「지역사회와 생계」 제3항
당사국과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이동성 야생동물종에 관한 정보를 지역사회에 제공하여, 한 종의 개체가 이동경로 전반에서 공동의 가치를 가질 수 있음을 알리고, 그 종의 보전·이동경로의 연결성·관련 지역사회 모두가 공유하는 가치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도록 이동경로상의 지역사회와 다른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촉진할 것이 요청된다.

이동성 야생동물종의 보전에 관한 협약 당사국총회 결의 제14.17호 「지역사회와 생계」 부속서 제2항
지역사회가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이동성 야생동물종을 관리하고 보호할 권리는 지원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보호와 관리를 위해서는 이동성 야생동물종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보전 이익을 배분할 지역 기구의 설립·강화와 역량 배양이 필요하다. 지역사회는 보호구역 지정, 자원의 이용 자제, 밀렵 방지·감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원을 놓고 경쟁할 수 있는 상업적 자원 채취나 불법 야생동물 거래 등의 강력한 외부 주체로부터 지역사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더 넓은 차원의 거버넌스도 중요하다.

③

CBD는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와 자원 이용 이익의 공정한 공유**를 인정한다. 생물자원이 풍부한 개발도상국은 자원 접근을 관리하고 이용 이익을 공유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 제1항, 제7항
1. 자연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결정할 권한은 각국 정부에 있고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다.

7. 각 체약당사국은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르고, 필요한 경우 제20조와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재정체계를 통하여, 유전자원의 연구·개발 결과 및 상업적 이용과 그 밖의 이용으로 생기는 이익을 그 자원을 제공하는 체약당사국과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정책적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공유는 상호 합의한 조건에 따른다.

NoteBase

④

람사르협약은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추구한다. 습지는 동·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고 생물자원 생산과 수질 정화 기능을 수행하므로, 이러한 생태적 기능을 유지하도록 보호한다.

물새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제3조 제1항
1. 체약국은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습지의 보전과 그 영역내에 있는 습지의 가능한 한 현명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하고 이행한다.

NoteBase

문 1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휠체어 사용자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를 설치하려고 할 때, 고려해야 할 세부 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 이하로 하되,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②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대지 내를 연결하는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3cm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④ 휠체어 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m마다 1.5m×1.5m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정답 3번

①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나목(1)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1)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

②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위해 접근로의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가목(1)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1)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 로 하여야 한다. (

③

대지 내를 연결하는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으면 그 **높이 차이는 2cm 이하**로 하여야 한다. 선지의 3cm는 허용 기준을 초과한다.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나목(2)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2) 대지 내를 연결하는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2센 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NoteBase

④

휠체어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이 교행하도록 **50m마다 가로·세로 각각 1.5m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의무 설치 기준은 아니다.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가목(2)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2)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 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

NoteBase

문 19. 국토교통부 고시 「조경기준」(2018)상 옥상조경 및 인공지반 조경의 일반적인 식재 토심 두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배수층의 두께를 제외한다.)

① 초화류 및 지피식물: 15cm 이상(인공토양 사용시 10cm 이상)

② 소관목: 30cm 이상(인공토양 사용시 20cm 이상)

③ 대관목: 45cm 이상(인공토양 사용시 30cm 이상)

④ 교목: 60cm 이상(인공토양 사용시 40cm 이상)

정답 4번

①

2018년 기준으로 초화류 및 지피식물의 식재 토심은 배수층을 제외하고 **15cm 이상, 인공토양 사용 시 10cm 이상**이었다.

조경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13호, 2018. 7. 3.) 제15조(식재토심)
① 옥상조경 및 인공지반 조경의 식재 토심은 배수층의 두께를 제외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두께로 하여야 한다.
1. 초화류 및 지피식물 : 15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10센티미터 이상)

②

2018년 기준으로 소관목의 식재 토심은 배수층을 제외하고 **30cm 이상, 인공토양 사용 시 20cm 이상**이었다.

조경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13호, 2018. 7. 3.) 제15조(식재토심)
① 옥상조경 및 인공지반 조경의 식재 토심은 배수층의 두께를 제외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두께로 하여야 한다.
2. 소관목 : 30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20센티미터 이상)

③

2018년 기준으로 대관목의 식재 토심은 배수층을 제외하고 **45cm 이상, 인공토양 사용 시 30cm 이상**이었다.

조경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13호, 2018. 7. 3.) 제15조(식재토심)
① 옥상조경 및 인공지반 조경의 식재 토심은 배수층의 두께를 제외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두께로 하여야 한다.
3. 대관목 : 45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30센티미터 이상)

NoteBase

④

2018년 기준으로 교목의 식재 토심은 배수층을 제외하고 **70cm 이상, 인공토양 사용 시 60cm 이상**이었다. 선지의 60cm와 40cm는 각각 이 기준에 미달한다.

조경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13호, 2018. 7. 3.) 제15조(식재토심)
① 옥상조경 및 인공지반 조경의 식재 토심은 배수층의 두께를 제외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두께로 하여야 한다.
4. 교목 : 70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60센티미터 이상)

NoteBase

문 2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사업면적 20만m^2 이상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 공사

② 사업면적 20만m^2 이상의 물류단지개발사업

③ 사업면적 20만m^2 이상의 학교설치공사

④ 사업면적 20만m^2 이상의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정답 3번

NoteBase

①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는 **사업면적이 20만㎡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사목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k6rXm7Qkfhuw0iN_cssYntgP-aI5G1kk.webp

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협의시기는 의제하려는 주된 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등을 받기 전으로 한다.
가.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나.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2.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의 규모는 협의 요청시기란 중 승인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3.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등을 받으려는 시기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 표 제17호마목의 골재채취예정지 및 준공된 선형사업은 다음 각 목의 사업에서 제외한다.
가.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나. 사업의 승인등을 할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나 평가 대상규모 미만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그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그 사업규모와 신규로 승인등이 된 사업규모(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다. 해당 사업의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위 표의 개정으로 새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위 표의 개정 당시 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 승인등으로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해당 사업의 규모와 신규로 승인등이 되는 사업(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규모와의 합이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2) 위 표의 개정 당시 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증가되는 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15퍼센트 이상인 경우 또는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사업자가 신규 승인등을 받으려는 같은 종류의 사업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15퍼센트 이상인 경우
3) 2)에도 불구하고 위 표 제3호마목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의 설치사업은 동일

NoteBase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 승인등(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해당 사업의 승인등을 받을 당시 보다 15퍼센트 이상 그 규모가 증가되거나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 대상이 되는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9.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하고,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해당 사업면적 또는 용량 등별표 3 대상사업의 최소면적 또는 용량 등+· · · ·

10. 하나의 사업계획에 위 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둘 이상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하 "복합사업"이라 한다)은 개별 사업별로 구분하여 하나의 평가서로 통합 작성하거나 개별 사업별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함께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복합사업 중의 개별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평가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협의 요청시기에 따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11.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가. 위 표 제2호라목의 대상사업 중 이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사업지역(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는 제외한다)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기존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유치 업종 및 업종별 배치계획을 포함하여 환경영향을 예측·평가하였고, 적절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협의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위 표 제3호가목 및 제17호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상사업 중「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다. 이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사업지역에서 그 사업계획의 주된 목적(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사업의 세부 기능을 말한다)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추진 근거법률만을 변경하여 다시 단지·지구 지정 등을 하는 경우로서 협의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NoteBase

②

물류단지개발사업은 **사업면적이 20만㎡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아목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bP-iiBEI7ipUqRvFW7Iul1VevWVZSRfZ.webp

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협의시기는 의제하려는 주된 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등을 받기 전으로 한다.
가.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나.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2.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의 규모는 협의 요청시기란 중 승인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3.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등을 받으려는 시기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 표 제17호마목의 골재채취예정지 및 준공된 선형사업은 다음 각 목의 사업에서 제외한다.
가.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나. 사업의 승인등을 할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나 평가 대상규모 미만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그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그 사업규모와 신규로 승인등이 된 사업규모(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다. 해당 사업의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위 표의 개정으로 새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위 표의 개정 당시 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 승인등으로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해당 사업의 규모와 신규로 승인등이 되는 사업(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규모와의 합이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2) 위 표의 개정 당시 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증가되는 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15퍼센트 이상인 경우 또는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사업자가 신규 승인등을 받으려는 같은 종류의 사업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15퍼센트 이상인 경우
3) 2)에도 불구하고 위 표 제3호마목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의 설치사업은 동일

NoteBase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 승인등(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해당 사업의 승인등을 받을 당시 보다 15퍼센트 이상 그 규모가 증가되거나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 대상이 되는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9.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하고,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해당 사업면적 또는 용량 등별표 3 대상사업의 최소면적 또는 용량 등+· · · ·

10. 하나의 사업계획에 위 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둘 이상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하 "복합사업"이라 한다)은 개별 사업별로 구분하여 하나의 평가서로 통합 작성하거나 개별 사업별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함께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복합사업 중의 개별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평가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협의 요청시기에 따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11.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가. 위 표 제2호라목의 대상사업 중 이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사업지역(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는 제외한다)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기존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유치 업종 및 업종별 배치계획을 포함하여 환경영향을 예측·평가하였고, 적절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협의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위 표 제3호가목 및 제17호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상사업 중「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다. 이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사업지역에서 그 사업계획의 주된 목적(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사업의 세부 기능을 말한다)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추진 근거법률만을 변경하여 다시 단지·지구 지정 등을 하는 경우로서 협의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NoteBase

③

학교 설치공사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는 **사업면적 30만㎡ 이상**이다. 선지는 그 기준을 20만㎡ 이상으로 잘못 제시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자목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Dzx4E_ptQ_9ajOIKQXr8ODcwY5jDujz0.webp

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협의시기는 의제하려는 주된 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등을 받기 전으로 한다.
가.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나.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2.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의 규모는 협의 요청시기란 중 승인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3.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등을 받으려는 시기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 표 제17호마목의 골재채취예정지 및 준공된 선형사업은 다음 각 목의 사업에서 제외한다.
가.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나. 사업의 승인등을 할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나 평가 대상규모 미만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그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그 사업규모와 신규로 승인등이 된 사업규모(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다. 해당 사업의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위 표의 개정으로 새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위 표의 개정 당시 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 승인등으로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해당 사업의 규모와 신규로 승인등이 되는 사업(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규모와의 합이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2) 위 표의 개정 당시 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증가되는 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15퍼센트 이상인 경우 또는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사업자가 신규 승인등을 받으려는 같은 종류의 사업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15퍼센트 이상인 경우

NoteBase

3) 2)에도 불구하고 위 표 제3호마목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의 설치사업은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 승인등(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해당 사업의 승인등을 받을 당시 보다 15퍼센트 이상 그 규모가 증가되거나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 대상이 되는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9.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하고,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해당 사업면적 또는 용량 등별표 3 대상사업의 최소면적 또는 용량 등+· · · ·

10. 하나의 사업계획에 위 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둘 이상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하 "복합사업"이라 한다)은 개별 사업별로 구분하여 하나의 평가서로 통합 작성하거나 개별 사업별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함께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복합사업 중의 개별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평가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협의 요청시기에 따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11.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가. 위 표 제2호라목의 대상사업 중 이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사업지역(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는 제외한다)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기존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유치 업종 및 업종별 배치계획을 포함하여 환경영향을 예측·평가하였고, 적절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협의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위 표 제3호가목 및 제17호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상사업 중「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다. 이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사업지역에서 그 사업계획의 주된 목적(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사업의 세부 기능을 말한다)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추진 근거법률만을 변경하여 다시 단지·지구 지정 등을 하는 경우로서 협의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NoteBase

④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은 **사업면적이 20만㎡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바목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IUUiVMP8YI8OyU6y6Bd6Z1sEjWAZsy86.webp

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협의시기는 의제하려는 주된 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등을 받기 전으로 한다.
가.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나.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2.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의 규모는 협의 요청시기란 중 승인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3.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등을 받으려는 시기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 표 제17호마목의 골재채취예정지 및 준공된 선형사업은 다음 각 목의 사업에서 제외한다.
가.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나. 사업의 승인등을 할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나 평가 대상규모 미만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그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그 사업규모와 신규로 승인등이 된 사업규모(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다. 해당 사업의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위 표의 개정으로 새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위 표의 개정 당시 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 승인등으로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해당 사업의 규모와 신규로 승인등이 되는 사업(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규모와의 합이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2) 위 표의 개정 당시 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증가되는 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15퍼센트 이상인 경우 또는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사업자가 신규 승인등을 받으려는 같은 종류의 사업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15퍼센트 이상인 경우
3) 2)에도 불구하고 위 표 제3호마목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의 설치사업은 동일

NoteBase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 승인등(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해당 사업의 승인등을 받을 당시 보다 15퍼센트 이상 그 규모가 증가되거나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 대상이 되는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9.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하고,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해당 사업면적 또는 용량 등별표 3 대상사업의 최소면적 또는 용량 등+· · · ·

10. 하나의 사업계획에 위 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둘 이상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하 "복합사업"이라 한다)은 개별 사업별로 구분하여 하나의 평가서로 통합 작성하거나 개별 사업별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함께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복합사업 중의 개별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평가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협의 요청시기에 따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11.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가. 위 표 제2호라목의 대상사업 중 이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사업지역(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는 제외한다)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기존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유치 업종 및 업종별 배치계획을 포함하여 환경영향을 예측·평가하였고, 적절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협의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위 표 제3호가목 및 제17호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상사업 중「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다. 이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사업지역에서 그 사업계획의 주된 목적(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사업의 세부 기능을 말한다)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추진 근거법률만을 변경하여 다시 단지·지구 지정 등을 하는 경우로서 협의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NoteBase